

노동법률 뉴스레터

2018/12

1. Case Study

ㆍ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변경내용 (약정휴일 제외 / 주휴일 포함)

2. 간단 Q&A

- ㆍ 근로자의 일방적 사직일자 통보에 대한 효력 및 회사 대응방안(사안별 상이, 평균임금 삭감 등)
- ㆍ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시 지급해야하는 임금상당액의 범위 (평균임금, 단 실비변상금품 제외)

1. Case Study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변경사항 (최저임금 판단 시 약정휴일 제외 / 주휴일 포함)

당사는 지난번 정부가 발표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약정휴일과 주휴일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듣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위 내용을 변경하여 약정휴일은 제외하고 주휴일만 포함시키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질의답변

최근 정부는 지난번 발표했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수정방침을 발표하면서 입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을 위한 시급 환산 시기준 시간을 소정근로시간과 약정유급휴일 및 주휴일을 포함하는 내용에서 **약정유급휴일** 시간과 수당을 제외 시킨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frac{9 \text{ 급여}}{9 \text{ 시간}} = \frac{\text{기본급}+주휴수당}{\text{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약정휴일 수당 및 시간 제외)

최저임금이 대폭상승(8,350/10.9% /)한 현 상황에서 약정휴일과 주휴일까지 최저임금 판단기준에 포함될 경우, 최저임금 위반 판단을 위한 시급 환산 시 분모 역할을 하는 기준 근로시간이 약정유급휴일(토요일)유무에 따라 사업장별로 상이하다는 논란(209H,226H,240H) 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주휴일이 기준 근로시간에 포함되게 되면서 기존에 활용되어 왔던 月174시간의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약정휴일(토요일) 유무에 관계없이 <u>대부분의</u> 사업장이 月209시간의 기준을 적용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u>기준은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u>

구분	현재 (변경 전)		변경 후
一一正	법원	고용부	104
토요일 (유급4H)	174H	226H	- 209Н
토요일 (유급8H)	174H	240H (243H)	

※월 소정근로(174H) + 주휴(35H) = 209H약정휴일(토요일) 제외

또한 `19년 최저임금(8,350원) 기준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최저 월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변경 전)		변경 후
구분	법원 (174)	고용부	(209)
토요일 (유급4H)	1,452,900	1,887,100 (226H)	1 745 150
토요일 (유급8H)		2,004,000 (240H)	1,745,150

위와 관련하여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최저임금 관련 내용이 대폭 변화됨에 따라 사업장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장에 한해 **최저임금 처벌을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분	내용	기한
대상	정기상여금 등의 지급주기를 변경하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 되지 않는 등 사업장에서 임금 체계 개편의지가 있는 경우	`19년
유예 기간	-취업규칙 변경: <u>3개월</u> -단체협약 변경: <u>6개월</u> <i>(3개월 + 3개월 추가)</i>	한시 유예
고소 고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업주 노력도 함께 고려하여 수사	

정부는 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 했으며, 28일까지 국민의견 수렴 후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으로,

각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및 상여, 복리후생비등을 확인하여 내년 최저임금 기준 변경에 대해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사료됩니다.

추후 이와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시 빠르게 해당 내용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Q&A 1

근로자의 일방적 사직통보 시 그 효력과 회사의 대응방안 (평균임금 삭감 및 징계 등)

약 5년을 근무했던 근로자가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일주일 뒤부터 새로운 직장에 출근해야 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는 인수인계를 요청하며 최소 한 달은 근무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근로자는 막무가내로 일주일 뒤 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입장에서 별도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나요? (당사 취업규칙은 사직 시 최소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질의답변

우선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사직통보에 대해 <u>귀 사가 반드시</u> 승인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와 합의되지 않은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민법이 적용되는데, 보통 월 단위로 급여를 지급하는 통상적인 사업장에서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 경과 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민법 제660조

<u>효력 발생</u>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예시) 매월 1일~말일까지의 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 하는 사업장에서 **5/15 사직서 제출 시** → 당기(5월)후의 1기(6월)가 지난 후 **7월 1일**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위 규정보다 짧은 기간을 두고 있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의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되게 되므로, 귀 사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직서를 반려할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사직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반려한 이상, <u>사직의 효력 발생</u>
전까지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①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을 주거나,
②그로 인한 <u>징계</u> 및 ③손해배상 청구(명확한
손해 발생 시)도 가능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45, 2015.07.16

···(중략) 다만, <u>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u> 수락(수리)하지 않은 기간 동안 근로자는 출근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하고 <u>결근한 기간은 평균임금</u> 산정 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1.3.31 선고 71누14판결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u>아직 수리되지</u> <u>않고 있는 동안에 직장을 무단이탈하면</u> <u>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u>

아울러 근로자의 무단결근기간이 길어 평균임금이 현저히 떨어져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함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2항)

간단 Q&A 2

부당해고구제신청 인용 시 임금상당액의 범위 (평균임금 / 실비변상금품 제외)

당사의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저질러 해고절차를 거쳐 해고하였지만,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원직복직 및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당사의 임금체계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과식대, 활동비 등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이뤄져있는데 근로자는 각종 수당과 더불어 식대와활동비 등 실비변상적 금품도 함께 요구하고있습니다.임금상당액 지급 시 이러한실비변상적 금품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답변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 신청이 인용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①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②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u>임금상당액이란 통상적으로</u>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2.5.31,선고 2000다18127 판결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해고일로부터 당해 사건의 판정일)동안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상당액 지급범위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 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u>근로자는</u>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 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3.12.31.선고 92다11463 판결

···(중략) 부당해고기간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이라함은 <u>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u> <u>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임금이 전부 포함</u>된다.

실비변상적 금품(식대, 활동비 등)은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구제 인용 시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귀 사의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되, 실비변상적 금품은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3.12.31,선고 92다11463 판결

···(중략) 위 업무활동보조비, 기밀비 및 특근매 식비는 모두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위 임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 없다.

[사안별 임금상당액 포함 여부]

구분	임금상당액 포함 여부	비고
연장/야간/ 휴일 수당	Δ	-정기적인 연/야/휴는 포함
생활보조적, 복리후생, 실비변상금품	X	활동비, 특근식대 등
정기 상여금	0	
해고 이후 임금인상분	0	

간단 Q&A 2

부당해고구제신청 인용 시 임금상당액의 범위 (평균임금 / 실비변상금품 제외)

당사의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저질러 해고절차를 거쳐 해고하였지만,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원직복직 및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당사의 임금체계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과식대, 활동비 등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이뤄져있는데 근로자는 각종 수당과 더불어 식대와활동비 등 실비변상적 금품도 함께 요구하고있습니다.임금상당액 지급 시 이러한실비변상적 금품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답변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 신청이 인용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①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②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상당액이란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2.5.31,선고 2000다18127 판결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해고일로부터 당해 사건의 판정일)동안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상당액 지급범위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 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 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3.12.31,선고 92다11463 판결

···(중략) 부당해고기간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이라함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임금이 전부 포함된다.

실비변상적 금품(식대, 활동비 등)은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구제 인용 시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u>귀 사의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u> <u>지급하되, 실비변상적 금품은 제외하고</u>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2001.01.18 선고, 서울고법 99나54525 판결

원고들은 그 외에도 피고로부터 매월 업무활동 보조비, 기밀비, 특근매식비를 정기적으로 지급 받았으니 이를 위 임금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 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업무활동보조비 및 기밀비는 피고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출되 는 조사 및 정보활동 등 경비를 보조하기 위한 것이고, 특근매식비는 근무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오전 근무 개시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자 등에게만 지급되는 사실 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업무활동보조비, 기 밀비 및 특근매식비는 모두 실비현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위 임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 없 다.